

KB공급망밸류업대출 기본약관

이 KB공급망밸류업대출 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국민은행(이하“은행”)과 이용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KB공급망밸류업대출”(이하 “동 상품”이라 합니다)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이용자는 은행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KB공급망밸류업대출 관련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공급망밸류업대출”이라 함은 은행과 동 상품의 이용약정이 되어 있는 이용자 인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에 상호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른 결제 대금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이 승인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구매기업의 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은행이 수령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상환원리금을 적립 및 상환하는 공급망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KB공급망밸류업대출을 이용하는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을 말합니다.
 3. "판매기업"이라 함은 일정한 물품 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구매기업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하며, 구매기업이 동 상품과 관련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로서 대위변제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구매기업"이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공급 계약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하며,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동 상품의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정산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정상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등의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6. “정산(예정)일”이라 함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간 계약에 의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7. “정산채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과 계약에 의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

에 지급할 정산금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8. “카드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거래고객과의 경상활동에 기초하여 거래고객의 카드결제로 카드사에 대하여 장래에 가지게 될 가맹점 대금 청구 채권으로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을 매출채권(장래 포함)을 말합니다.
 9. "판매기업 지급승인"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공급계약에 따라 재화 등을 구매기업에 공급한 대가로서 구매기업에게 받을 대금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은행에 대출한도 약정을 하여 구매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출을 구매기업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기업이 은행에 해당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구매기업 채권양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거래고객과의 경상활동을 통해 장래에 발생할 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상환원리금 적립계좌"라 함은 동 상품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을 사전에 정한 상환 스케줄 및 상환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만큼 적립하는 계좌로, 상환기일에 동 계좌에서 우선 원리금 상환출금처리가 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동 계좌는 입금만 가능하고, 대출원리금 상환 외의 임의 출금을 제한됩니다.
 12. "구매기업 고객입금계좌"라 함은 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에서 상환원리금 적립계좌로 적립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 현금흐름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KB공급망밸류업대출 약정 체결 및 변경)

- ① 이용자가 KB공급망밸류업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은행과 KB공급망밸류업대출 약정을 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KB공급망밸류업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KB공급망밸류업대출 약정의 해지)

- ① 이용자가 KB공급망밸류업대출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 해지 통지가 은행에 도달하는 것으로 본 약정이

해지됩니다.

- ② ‘판매기업’이 KB공급망밸류업대출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의사 통지가 은행에 도달된 이후에는 ‘구매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이 약정·실행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행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그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본 약정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 ③ ‘구매기업’ KB 공급망 밸류업대출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해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판매기업’ 및 은행과 다른 ‘구매기업’사이의 본 약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5조(지급승인 통보)

- ① 판매기업은 은행과 제3조에서 정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 ②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 재화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매기업의 KB공급망밸류업대출 이용약정 및 대출신청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 관련 정보 및 지급승인금액을 포함하여 대위변제 의무를 약속하는 지급승인서를 은행에 서면 등을 이용하여 통보합니다.
- ③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판매기업은 공급계약 관련 정보 및 지급승인금액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은행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④ 은행은 KB공급망밸류업대출 이용자가 제3항의 공급계약 관련 정보 및 지급승인금액 등 정보를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조(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 양도)

- ① 구매기업은 KB공급망밸류업대출 약정 및 대출신청과 동시에 구매기업의 경상활동으로 발생한 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권한을 은행에 위임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결제 대금이 사전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면 건별대출 상환원리금 적립금계좌에 상환원리금을 적립하고, 사전에 정한 상환 스케줄에 따른 계산으로 산출된 상환원리금 적립금 적립 후 잔액을 구매기업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7조(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양도 계약 이행 의무 해태로 인한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

은행은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기업 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의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양도된 정산채권 또는 카드매출채권 대금 전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은행과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제7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은행은 KB공급망별류업대출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요청한 거래내용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상대방(‘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에) 및 은행에 불일치 사실을 대출금실행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은 제8조와 같이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은행은 판매기업이 제공한 공급계약 관련 정보 및 지급승인금액 등을 전자적 장치나 서면 등을 사용하여 은행에 통보한 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이 통지한 공급계약관련 정보 및 지급승인금액 등에 기반하여 대출을 취급하면서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이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하자, 반품 등 이용자간의 공급계약에 기한 법률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이의 제기)

- ① 이용자는 KB공급망별류업대출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관련법령 및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